

() (.)

앞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내용(변경, 정정)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번호 :

오기
정정
인감
날인
위치

증권번호(배서번호)							
보험계약자(신청인)		(인)		(인)			
피 보험 자		(사단) 금융결제원		(사단) 금융결제원			
보험가입 금액 (월간출금한도 금액)	원 화						
	외 화						
보 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	간	간		
부 담 위 험 내 용 (피 보 증 인)							
계 약 기 간 (하자담보기간,납기,입찰일)							
계 약 금 액 (채무액,보증금액,세액)							
내 용							
사 유							
가()							
		1. 영업부점 2. 지역본부 3. 본사 4. 생략					
인 수 급		인 조 수 건		결 재	담 당	차 장	부서장
모 대리 접 점							
_____ () 가 23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9

12Page
"작성요령"
참 조

회 사 기 재 사 항 란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 산출근거	
---------------------------	--

첨부서류 및 기타참고사항	
---------------------	--

<h3 style="margin: 0;">환 급 보 험 료 영 수 증</h3>	
금 _____	원정 (W _____)
위 금액을 전면의 보험계약(증권 또는 배서번호 : _____) 내용변경에 따른 환급보험료로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주 소 _____ 상 호 _____ 성 명 _____ (인)	
부점귀중	

() (.)

보험계약자인 본인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보증보험계약내용(변경·정정)증인계약(이하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과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은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보험가입금액)

본인이 회사와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원 (₩)
--------	--------

제2조(채무 또는 의무의 성신행)

본인은 제1조의 보증보험계약 및 그 변경(보험가입금액의 증액·감액, 보험기간의 연장·단축, 기타사항의 변경)계약에 따라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 ①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 ②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즉시 변상한다.
 - 가.본인·보증인 또는 몰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보전(해지 포함)·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 나.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소요된 비용
 - 다.소송비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 라.기타 법률상 또는 약정상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 ③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변제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율에 의한다.

제4조(담보)

- ①본인과 보증인은 제3조에서 정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며, 연대보증인도 세운다.
- ②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인의 변제능력이 변동되어, 회사가 담보의 교체, 추가담보 또는 보증인의 교체, 추가보증을 요청하는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따르기로 한다.
- ③본인과 보증인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데 동의하며, 그 취득금으로 회사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그 잔존채무도 즉시 변상한다.

제5조(어음 등의 제공과 보충권 부여)

- ①본인과 보증인은 제3조에서 약정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약속어음 또는 수표를 회사에 제공한다.
- ②제1항의 어음 또는 수표를 제공한 후에 동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한 거래은행을 변경하거나 당좌거래의 대표자·상호·인장 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로 교환하여 제공한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어음 또는 수표의 액면금액란, 지급기일란 등을 공란으로 하여 제공한 때에는 회사의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에 따라 액면금액, 지급기일 등을 보충할 권리를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한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어음 또는 수표를 공증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의 비용으로 공증행위에 필요한 일체의 협력을 다한다.

제6조(담보물건의 보험가입)

- ①본인과 보증인은 제4조의 담보에 대하여 회사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종류·금액·기간 등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담보권이 해지되거나 소멸할 때까지 그 보험에 계속 가입하겠으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한다.
- ②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한다.
- ③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하고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수 또는 질권설정하여도 본인과 보증인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본인과 보증인은 본인의 성명·주소·상호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본인의 재산·경영·업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곧 알린다.
- ②본인과 보증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린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알릴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한다.

제8조(사전구상)

- ①본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이나 통지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본인과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거나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은 때
 - 나.“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거래처에 해당되는 때
 - 다.본인의 부도 또는 어음교환소의 본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라.본인의 재산 또는 본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의 명령이 있거나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 마.본인에 대하여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 바.본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 사.본인이 제세공과금을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때
 - 아.허위자료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②제1항의 경우에 본인 및 보증인은 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유무에 불구하고 회사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또한 회사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본인과 보증인은 회사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본인 또는 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④본인과 보증인은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주계약의 목적물이 있으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회사에 인도하고, 회사가 보관·관리 또는 운영하도록 한다.

제9조(변제 등의 충당순위)

- ①본인과 보증인은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본인이나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이 제3조에서 약정한 채무잔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회사가 제3조 제2항의 비용,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에 따르기로 한다.

1P~6P까지
앞장과 간인
(총5번)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담보나 보증인의 유무 등 채권보전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부담·면책조항)

- ①본인과 보증인은 회사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이하 “증서등”이라 한다)가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 도중의 사고 등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에 회사의 장부·전표 또는 전산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의 청구에 따라 즉시 그에 대신할 증서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 ②회사가 증서등의 인영·서명을 본인과 보증인이 회사에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과 보증인이 부담하며, 증서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1조(합의관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_____ 지점(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다만, 본인과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연대보증)

- ①본 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회사와 약정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모든 채무를 보험계약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약한다.
- ②본 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제공한 담보 또는 타 보증인을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로 대체하거나,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으로 교체를 요청할 경우, 회사가 동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담보를 대체하거나 보증인을 교체하면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신용정보의 제공)

본인과 보증인은 보험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본인과 보증인의 보험사고 내용을 은행 등 여타 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4조(특약조항) 본인과 보증인은 아래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다.

본인과 보증인은 앞면의 ()보험계약내용 [] 승인신청서에 기한 보증보험계약내용과 관련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약정서 및 이 약정서의 주요내용인 『보증보험 계약관련 중요내용 설명문』을 교부 받았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주 소	자 택 전 화 번 호	
	영업장주소	영 업 장 전 화 번 호	
	상 호 · 직 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인)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E-MAIL주소		

	주 소	자 택 전 화 번 호	
	영업장주소	영 업 장 전 화 번 호	
	상 호 · 직 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인)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E-MAIL주소		

	주 소	자 택 전 화 번 호	
	영업장주소	영 업 장 전 화 번 호	
	상 호 · 직 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인)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E-MAIL주소		

	주 소	자 택 전 화 번 호	
	영업장주소	영 업 장 전 화 번 호	
	상 호 · 직 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인)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E-MAIL주소		



귀중

1P~6P까지
앞장과 간인
(총5번)

아래사항은 우리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와 그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 우리회사는 보험계약자인 귀하께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의 채무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귀하에게 보증 보험증서를 요구하는 단체 또는 개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이 경우 우리회사는 지급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각종 법적절차 비용을 포함한 기타 소요비용을 귀하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우리회사는 귀하께서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우리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우리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 또는 보험사고 예비통보를 받거나, 귀하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나빠졌을 경우 등에는 귀하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이나 통지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와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43조에 의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연대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429조 ①항)
- 우리회사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단서조항)
- 연대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라도 연대보증인은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간에 균등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48조 ②항)

-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 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신용·이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 등 보증을 요구하는 내용에 비하여 신용·이행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보증보험 이용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 즉,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연대보증인을 통하여 자신의 신용·이행능력을 확인 또는 보완시켜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증권을 발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인)	
연대보증인	(인)	(인)
	(인)	(인)

9

귀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수입금액 증명원

종 류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납 세 자	주 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종 류	업 태		종 목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수입금액)	세 목	납부세액
부 터	까 지			
합 계				
<p>주1)상기 자료는 보험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p> <p>2)과세기간은 최근 1년간 납세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함</p>				
<p>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작성 년월일 : 20</p> <p>작성자 : 소 속 직 책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p> <p>확인자 : 소 속 직 책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p> <p>제출기관 : 상 호(법인명) (인)</p>				
<p>서울보증보험(주) 귀중</p>				
<p>※납세자란은 빈란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p> <p>※작성자는 제출업체 경리 담당자 또는 세무사사무소 재무제표 작성자가 되며, 확인자는 담당세무사 또는 제출업체 경리책임자가 확인합니다.</p>				

CMS 이용신청 및 보험가입 절차

1. 업무처리 절차

- ① 이용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금융결제원에 제출 → ② 결제원은 CMS 이용승인 적격성 검토 후 보증보험에 청약서류 이관 → ③ 보증보험은 가입심사 후 이용기관 앞 통지 → ④ 이용기관은 보험료 납부 → ⑤ 보증보험은 보험증권을 결제원 앞 교부 → ⑥ 결제원은 CMS 이용 가승인서를 이용기관 앞 교부(기 이용기관은 ⑥번 생략)

2. 서류 제출 : 금융결제원 CMS팀(02-531-1096)

3. 보험관련 문의

－ 보험가입 인수조건, 보험료 계산·납부 등

· 신용 인수

- 신용불량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보험가입금액(월간출금한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인수를 원칙으로 함
(단, 자기자본 3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 필요 여부는 보증보험에 개별 문의)

· 개별 심사 후 인수

- 신용인수 이외의 건은 해당 이용기관이 보증보험과 개별 협의(업력, 매출규모, 자금성격 등) 후 인수조건(신용, 연대보증, 물적담보 등) 결정

· 보험료 계산 및 납부

- 보증보험에 개별 문의

· 보험료 납부계좌

- 국민은행 532001-01-002709 [예금주명:서울보증보험(주)]

－ 문의처 : 서울보증 CMS 담당자(02-566-5689)

4. 보험요율, 약정기간 및 만기갱신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월간출금한도금액)의 연 2%

- 최저 가입금액 : 1천만원 이상
- 이용기관은 은행 및 결제원에 납부한 직접접수담보금(현금담보)을 보증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음. 단, 직접접수담보금과 보증보험의 **부분이용(일부 현금담보 + 일부 보증보험)**은 불가
- 이용기관이 보증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결제원은 보험증권 수령 후 직접접수담보금을 반환

－ 신규보험 약정기간 및 만기갱신

- ‘1년형’(종료일 : 가입일 익년도 말일자) 또는 ‘2년형’(종료일 : 가입일 익익년도 말일자)
→ 가입일(보험개시일) : 보험료 납입일
→ 계약기간 만기도래 15일전(매년 12.15)까지 갱신 필요(매년 11.1~12.15까지 갱신)

5. CMS 이용신청 및 보험가입 제출서류

구 분	금융결제원 (CMS 이용신청)	서울보증 (보험 가입)
① 신규신청	<p><공 통> ·거대은행 CMS 이용계약서 사본 ·CMS 이용신청서</p> <p><법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일 경우 전원) ·통장 사본</p> <p><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 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일 경우 전원) ·통장 사본</p>	<p><공 통>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CMS 이용신청서 사본</p> <p><법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일 경우 전원) ·재무제표(별첨 '확인서' 서식 포함)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인감증명서 하단 [사용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 이라고 기재하고 '용'자 옆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연대보증인 신분증사본(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p> <p><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 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일 경우 전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별첨 서식 사용)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인감증명서 하단 [사용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 이라고 기재하고 '용'자 옆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연대보증인 신분증사본(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p>
② 담보변경	<p><법인·개인> ·CMS 이용(변경)신청서</p>	<p><공 통>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CMS 이용(변경) 신청서 사본</p> <p><법인> ①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p> <p><개인> ①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p>
③ 한도증액	<p><법인·개인> ·CMS 이용(변경)신청서</p>	<p><공 통> ·()보험계약(변경·정정)승인신청서 ·CMS 이용(변경) 신청서 사본</p> <p><법 인> ①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p> <p><개 인> ①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p>
④ 만기갱신	<p><법인·개인> ·CMS 이용(변경)신청서</p>	<p><법인·개인> ② 담보변경과 동일한 서류</p>

주)①신규로 CMS 이용을 신청할 경우

②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변경할 경우(직접접수담보금, 은행지급보증, 은행접수 → 보증보험)

③월간출금한도액(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할 경우(보험기간 종료일은 기존계약 종료일과 동일, 기존계약 종료일이 1년 이내 끝날 경우 '2년형'으로 갱신 가능)

④계약기간 만료로 갱신할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매년 11.1~12.15)까지 갱신

※월간출금한도금액(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무제표(부가세과세증명원)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단, 보증보험에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월간출금한도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설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재무제표(부가세과세증명원)를 제출할 수 없는 이용기관은 서울보증(02-566-5689)으로 문의

6.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및 ()보험계약(변경·정정)승인 신청서 작성요령

가. 공통 적용사항

◆ 반드시 각 페이지마다 인감으로 간인(1~6 Page)을 날인하여야 함

《문서전체(1~6 Page)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임》

→ 간인(間印)요령 : 앞장을 절반 접을 경우, 접힌 뒷부분과 뒷장의 적당한 여백 아무 곳이나 겹쳐서 날인함

→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도 신청인과 같은 방법으로 간인하여야 함
(자기자본 3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필요함)

※ 연대보증인은 인감증명서 하단 [사용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 이라고 기재하고 ‘용’자 옆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청약서 작성 후 누락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함(누락될 경우 재 작성, 제출하여야 함)

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 음영부분(연녹색)의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 (모두 5곳)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월간출금한도금액을 기재함

① 1Page 상단(보험계약자 인적사항 기재, 날인)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비영리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전부 기재(개인 공동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전화번호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업무담당자 핸드폰번호도 함께 기재함

② 1Page 좌측 중앙(오 기재사항 정정날인)

- 추후 본 청약서 심사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재 작성, 제출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고자 함
- ※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 정정인감도 계약자 정정인감 아래에 날인하여야 함

③ 1Page 하단(정보제공·활용 동의란 서명, 날인)

④ 4Page 약정서(인적사항 기재, 날인)

⑤ 6Page 중요내용 설명문(서명, 날인)

◆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각 Page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 서명, 날인하여야 함

다. ()보험계약(변경·정정)승인 신청서

◆ 음영부분(연녹색)의 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 (모두 7곳)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월간출금한도금액을 기재함

① 1Page 상단 좌측 (보험계약자란 서명, 날인, 보험가입금액 기재)

② 1Page 상단 우측 (보험계약자란 서명, 날인, 보험가입금액 기재)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전부 기재(개인 공동사업자는 주민번호 기재)
- 1Page 상단 여백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업무담당자의 핸드폰번호를 기재함

③ 1Page 좌측 중앙(오 기재사항 정정날인)

- 추후 본 신청서 심사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재 작성, 제출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고자 함
- ※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 정정인감도 계약자 정정인감 아래에 날인하여야 함

④ 1Page 하단(정보제공·활용 동의란 서명, 날인)

⑤ 2Page 하단(환급보험료영수증 서명, 날인) -- 월간출금한도금액, 계약기간단축 등의 경우

⑥ 4Page 약정서(인적사항 기재, 날인)

⑦ 6Page 중요내용 설명문(서명, 날인)

◆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각 Page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 서명, 날인하여야 함